

아) 재해구호휴가

- (1) 수해 · 화재 · 봉괴 · 폭발 등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교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승인할 수 있음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

〈 대규모 재난의 정의 〉

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)

-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·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
  -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
  -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

- (가) '피해를 입은 교원'이라 함은 재난 ·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,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말함
- (나) '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'이라 함은 재난 발생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 · 인척 또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을 돋고자 하는 교원을 말함  
※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 승인 가능
- (2) 학교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정도와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감안, 학생수업상의 지장 유 · 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

자) 가족돌봄휴가

- (1) 교원은 유 ·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
- ①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의 학교(이하 "어린이집등"이라 한다)의 휴업 · 휴원 · 휴교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\*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
\*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임시휴업·휴업일(방학, 재량휴업 등), 감염병 ·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·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
- ②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
※ (예) 입학식, 졸업식, 학예회, 운동회, 참여수업, 학부모 상담 등
- ③ 미성년자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(이하 "장애인"이라 한다)인 자녀 · 손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)에 동행하는 경우
- ④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
※ 질병,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